

인천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4가단2396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4. 9. 24.

판 결 선 고 2024. 11. 5.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21. 11. 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1. 12. 27. 접수 제519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F 주식회사가 E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3. 15.자 2004차2191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전전 양수한 채권자이다.

E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1. 11.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2021. 12. 27.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협의분할약정은 원고 등 E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E에게 위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E의 부(父)인 망인은 2021. 11. 4.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자녀인 D, H 및 E이 망인을 상속하게 된 사실, E은 2021. 12. 8. 인천가정법원 2021느단2240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2021. 12. 14.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 피고, D 및 H은 2021. 12. 24.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2021. 12. 27.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E은 위 협의분할약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은 위 상속포기 수리 심판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망인의 상속인이거나,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별지